

의안 번호	971	【울산광역시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】 검 토 보 고 서
----------	-----	--

1. 검토경과

- 가. 제출 일자 : 2013. 04. 03.(수)
- 나. 제출 자 : 울산광역시중구청장
- 다. 위원회 회부일자 : 2013. 04. 04.(목)
- 라. 위원회 심사일자 : 2013. 04. 11.(목)

2. 개정이유

- 2013. 1. 1. 개정된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에 따라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간을 1년 연장하는 등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- 가.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한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(안 제2조)
- 나. 고용우수기업에 대한 감면기한 및 지원시책의 종료에 따라 조문을 삭제함(안 제6조)

4. 관련법령

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4조, 제38조

5. 검토의견

- 2013. 1. 1. 개정된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38조 제4항의 종교단체의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간을 1년 연장하는 사항으로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